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가단510957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

피고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김학금

2. B

변론 종결2024. 11. 19.

판결 선고2024. 12. 17.

주 문

1. 피고 B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가.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5,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169,421,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2024.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제3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피고 A의 경우 대위에 따른 인도청구 및 구상금청구, 피고 B의 경우 양수금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의 청구가 이중 청구라거나 채권양도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의 부진정연대채무를 토대로 한 것으로 현재의 실무 판결례에 부합되는 청구인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채권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2억 5,500만 원에 대한 인도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임대인이 본인의 건물인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이후로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¹⁾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유창훈

별지

1) 원고가 당사자인 동일한 구조의 사건에서도 위와 같이 판단되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01714 판결, 같은 법원 2024가단5272968 판결 등 참조).